|  |  |  |
| --- | --- | --- |
| **국가외환관리국 수입대금 송금**  **핵소제도 개혁의 유관문제에**  **관한 통지**  회발[2010]57호  국가외환관리국 각성, 자치구, 직할시 분국의 외환관리부, 심천(深圳), 대련(大连), 청도(青岛), 하문(厦门), 영파(宁波)시 분국, 각 중국자본 외환지정은행:  수출입 핵소제도의 개혁을 촉진하고 화물무역 외환관리를 총량심사, 비현장심사와 주체 감독관리로의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외환관리국은 2010년 5월 1일부터 천진(天津), 강소(江苏), 산동(山东), 호북(湖北), 내몽골(内蒙古), 복건(福建) 및 청도(青岛) 등 7개 지역에 화물무역 수입대금 송금 핵소제도의 시범 개혁을 진행한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국가외환관리국은 전국 범위 내의 수입 핵소개혁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바, 유관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수입 핵소개혁의 목표는 진실성 원칙을 기초로, 인본주의를 견지하며, 관리방식과 수단의 전환을 통해 무역 편리화를 촉진하고, 기업과 은행의 경영원가를 절감하여, 대외무역의 새로운 형세와 발전에 적합하게 한다. 기업의 무역자금 흐름과 화물 흐름의 정보에 대한 전면적인 파악을 통해 동태적인 감독과 모니터링 경보분석 유지를 강화하고 각 위법 사항이 있는 국제 자금 흐름을 효과적으로 억제한다. 이러한 일련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개혁의 기본 방향은 수입대금 관리를 개별적으로 작성하여 핵소(核销）하는 것에서 총량 조사로 발전시키고, 현장조사에서 비현장 조사로 발전시키며 심사 행위를 관리감독 주체로 전환하여 외환국이 전면적으로 기업의 수입대금 및 도착 화물의 완전한 정보를 수집하여 정보 시스템을 바탕으로 비현장 총량 대조 진행을 실현해야 한다. 이러한 기초에서 비현장 관리 감독의 모니터링 경보를 통해 기업의 수입대금 지급상황에 대한 관리측정 분석을 진행하고 적시에 이상 행위를 식별해야 한다. 비현장 관리 감독 모니터링 경보와 현장 조사 등의 상황에 근거하여 기업에 대하여 조사하고 분류한다.  2. <화물 무역 수입대금 지급 관리 잠행 방법> 및 그 실시세칙(이하(잠행방법)이라 통칭하며 첨부 1,2 참조 요망)은 2010년 12월 1일 부로 시행된다. 그 시행일자로부터 수입단위는 반드시 <잠행방법>에서 규정하는 수입대금 지급업무 규정을 따라야 하며 은행 또한 <잠행방법>에서 규정하는 수입단위 수입대금 지급업무를 따라야 한다.  3. 은행은 반드시 2010년 11월 30일 전에 무역 대금 지급 조사 시스템(이하 조사 시스템이라 칭함)과 상호 연결 설치 업무를 완료 해야 하며 <잠행방법> 실시 일로부터 조사 시스템을 통하여 수입단위 명단, 수입대금 지급 등기표 및 분류 조사 등급 등과 관련된 정보를 조사해야 한다.  4. 수입 핵소(核销）개혁은 무역 편리화 추진에 있어 중대한 조치이며 각 분국은 반드시 본 개혁을 중요시하여 통일된 계획을 세워 개혁 업무 완성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1) 인식을 통일하고 개혁에 대한 조직의 영도를 강화해야 한다. 각 분국은 수입 핵소(核销） 개혁의 중대한 의의를 충분히 인식하여 주관 국장에 의하여 개혁 영도팀을 임명하고 관내 개혁 업무의 영도와 관리감독을 책임지며 관련부문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 개혁 영도팀의 하부에는 업무팀을 설치하고 그 업무와 기술인원을 포함하여 관내 개혁 실시와 정치 선전 해석을 책임지며 업무와 기술 지지 및 정보의 피드백 등의 구체 업무를 담당한다.  (2) <잠행 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총량 조사를 실시하고 동태 모니터링 및 분류 관리 업무를 실시하여 관리감독의 유효성을 제고한다.  (3) 선전과 교육을 강화한다. 총국의 통일 부서에서 다양한 형식의 선전과 해석 업무를 채택하여 은행 및 수입단위의 개혁 방법 및 정책 의도를 빠르게 이해시킨다. 외환국 업무인원에 대하여 관내 은행 및 수입단위는 각종 형태의 교육을 실시하고 은행과 수입단위로 하여금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신 정책 하의 업무 조작을 숙지시켜 개혁 조치에 대하여 요구하는 수준으로 오를 수 있도록 보장한다.  (4) 관내 조사 시스템에 대하여 기업과 은행 간의 소프트웨어를 연결하여 설치와 시범 운용 등의 기술적 업무를 지원한다.  (5) 적시에 집행 상황에 대하여 상급에 보고하고 월별로 총국에 수입 핵소(核销） 개혁 실시 상황을 보고한다.  5. 응급조치  조사 시스템에 만약 수치입력 불가, 중단 등 일시적으로 정상운영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각 분국은 반드시 총국 핵소(核销) 개혁 사무실에 고지하여 처리해야 하며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 기록해야 한다. 그 기간에 외환국이 책임처리하는 관련 수입대금 지급업무에 대하여 반드시 원장 업무를 진행해야 하며 그 업무에 대하여 기록해야 한다.  6. 조사 시스템 등록방식  조사 시스템 외환국 인터넷 주소:  http://100.1.63.3:9001/SafeChk  은행 시스템 인터넷 주소:  http://asone.safe:9101/asone  기업 시스템 인터넷 주소:  http://asone.safesvc.gov.cn/asone。  총국 핵소(核销) 개혁 사무실 연락처  전화: 010-68402546 010-68402547  팩스: 010-68402594  이메일: (내부) [tradebus@mail.safe](mailto:tradebus@mail.safe)；  tradetech@mail.safe  (외부)[tradebus@mail.safe.gov.cn](mailto:tradebus@mail.safe.gov.cn)；  tradetech@mail.safe.gov.cn  본 통지 발표일로부터 각 분국(외환 관리부)는 반드시 관련 준비 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본 통지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관내 센터 지국(지국), 은행 및 수입단위에게 발송해야 한다. 집행 과정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수입단위 및 은행은 반드시 즉각 소재지 외환국에 보고해야 하며, 각 분국(외환관리부)는 반드시 즉각 총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특별히 통지한다.  2010년 10월 20일  첨부 1: <화물무역 수입대금 지급 잠행방법>  <http://www.safe.gov.cn/model_safe/laws/pic/20101027094839626.doc>  첨부2: <화물 무역 수입대금 관리 잠행방법 실시세칙>  첨부1  **화물무역 수입대금 송금관리 잠행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 화물무역 수입대금 송금(이하 '수입대금 송금')의 관리를 진일보 완벽화하고, 무역 편리화를 추진하며, 대외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외환관리국 및 그 분지기구(이하 '외환국')는 법에 따라 수입대금송금의 진실성과 준법성에 대한 감독관리를 한다.  **제3조** 수입대금송금의 관리는 속지관리 원칙을 따르며, 외환국은 산하 수입단위와 외환업무를 경영하는 금융기구(이하 '은행')에 대해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4조** 국가는 화물무역 항목의 국제수지를 제한하지 않는다. 수입단위의 수입대금 송금은 진실하고 적법한 거래기반이 있어야 하며, 은행은 거래증빙의 진실성 및 수입대금 송금과의 일치성을 합리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제5조** 외환국은 수입단위의 수입대금 송금 현황에 대한 비현장 총량검사와 모니터링 경보를 실시하고, 이상자금 유동현황에 대한 현장 확인검사(이하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제6조** 외환국은 수입단위에 대한 분류관리를 실행하고, 비현장 총량검사 및 모니터링 경보를 바탕으로, 현장검사 현황과 수입단위의 외환관리규정의 준수 등의 정황을 종합하여, 수입단위를 "A 수입단위"와 "B 수입단위", "C 수입단위"로 나눈다. 분류관리 내용은 수입대금송금 심사와 수입대금송금 등기, 개별 보고 등 업무단계를 포함한다.  **제7조** 수입단위와 은행은 본 방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대금송금업무를 처리하고, 외환국의 현장검사를 협조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2장 명부관리**  **제8조** 수입단위는 법에 따라 대외무역경영권을 취득한 후, 관련 자료를 소지하고 외환국에 가서 "수입단위 외환송금명부"(이하 '명부'로 약칭함) 등기수속을 처리하고 수입대금송금업무 처리확인서에 서명해야 한다. 수입단위의 등기정보가 변경될 경우, 외환국에 가서 등기 변경수속을 처리해야 하며, 수입단위가 경영을 종료하거나 대외무역경영권이 취소된 경우, 외환국에 가서 등기 말소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9조** 수입단위를 명부에 포함시킨 후, 외환국은 해당 단위에 수입대금송금업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수입대금업무를 지도 관리한다.  **제10조** 외환국은 통일적으로 은행에 명부를 발표한다. 명부에 불포함된 수입단위에 대해, 은행은 직접 해당 단위에 대한 수입대금 송금업무를 처리하지 못한다.  **제11조** 명부 등기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수입단위에 대해, 외환국은 그 명칭을 명부에서 말소할 수 있다.  **제3장 수입대금 송금 관리**  **제12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수입대금송금은 다음과 같다.  (1) 경외로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2) 경내 보세감독구역이나 offshore계좌, 경외기구의 경내계좌에 수입대금을 지급하거나 심가공결전항목의 경내지급.  (3) 기타 대외 외환송금성질의 화물무역 항목의 대금지급.  **제13조** 수입단위는 결산방식이나 무역방식, 자금흐름에 근거, 규정에 따라 관련 증빙에 의해 은행에 가서 수입대금 송금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수입단위는 규정에 따라 수입대금 송금 검사정보 신고를 처리해야 한다. 은행은 규정에 따라 외환국에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제14조** 외환송금단위는 계약에 약정된 수입단위나 수입화물 통관서 경영단위와 일치해야 한다. 대리수입업무의 경우, 대리측이 수입이나 외화매입 송금을 책임져야 한다.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5조** 외환국은 명부에 불포함된 수입단위와 "C 수입단위"의 수입대금송금에 대한 사전등기관리를 실행해야 한다. 수입단위는 규정에 따라 외환국에 가서 수입대금 송금업무 등기를 처리해야 한다. 은행은 외환국이 발급한 등기증명서와 관련 증빙에 근거하여 수입단위의 수입대금 송금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16조** 외환국은 지도기간 수입단위와 "B 수입단위"의 수입대금 송금 및 외환국이 인증한 기타 업무에 대한 사후 개별 보고관리를 실행한다. 수입단위는 수입대금 송금을 처리한 후, 외환국에 본 단위 수입대금 송금과 대응되는 도착화물 또는 외화수금정보를 개별로 보고하고, 관련 증빙이나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4장 비 현장검사와 모니터링 경보**  **제17조** 외환국은 수입대금 송금 데이터와 수입화물 데이터(또는 수입항목의 외화수금 데이터)에 대한 비 현장총량대조를 실시하고, 수입단위의 수입대금 송금의 진실성과 일치성을 확인 조사해야 한다.  **제18조** 외환국은 수입단위를 주체로, 지역이나 업종, 경제유형 등 특징을 참조하여, 모니터링 경보 지표체계를 구축하고, 수입대금 송금과 화물수입 및 수입항목의 외화수금 정황에 대한 모니터링분석을 실시하며, 리스크 경보를 실시하여, 이상 거래와 주체를 식별한다.  **제19조** 외환국은 거시경제형세와 국제수지 균형수요에 근거하여 모니터링 경보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장 현장검사**  **제20조** 외환국은 비 현장검사 및 모니터링 경보 결과에 근거, 총량검사지표가 규정범위를 초과하거나 기타 이상정황이 존재하는 수입단위의 수입항목 외환수지업무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21조** 외환국은 피검사단위에 보고서를 요구하거나 수입단위 법정대표인 또는 수권자와 인터뷰를 하거나 현장조사 등 방식을 사용하여, 수입단위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 외환국은 은행의 수입대금 송금업무 처리의 합법성과 관련 정보 제출의 적시성, 정확성, 완전성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 수입단위와 은행은 외환국 현장검사에 협조하거나 협력하여, 관련 자료를 즉시,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  **제6장 분류관리**  **제24조** "B 수입단위"와 "C 수입단위"를 확정하기 전에, 외환국은 관련 수입단위에 통지해야 한다. 수입단위는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 업무일 내에 외환국에 설명할 수 있다.  **제25조** 외환국은 은행과 수입단위에 수입단위의 분류관리정보를 발표한다.  **제26조** 국가외환관리국은 국제수지형세와 외환관리수요에 근거, 심사분류의 기한이나 빈도, 표준, 적용하는 관리조치를 조정한다.  **제7장 부 칙**  **제27조** 수입단위라 함은 대외무역경영권이 있는 경내기구를 뜻한다.  **제28조** 은행과 수입단위가 본 방법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수입대금 송금업무를 처리한 경우, 외환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등 상관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한다.  **제29조** 대외무역경영권이 있는 보세감독구역 내 수입단위가 비 보세화물을 수입하고 외환을 송금하거나 대외무역경영권이 있는 개인의 수입대금송금업무에 대한 처리는 본 방법을 적용한다. 국가외환관리국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제30조** 본 방법은 국가외환관리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31조** 본 방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실시하며, 이전의 법규와 본 방법이 상이할 경우, 본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본 방법의 시행일로부터, 첨부에 포함된 법규는 폐지한다.  첨부: 폐지법규 목록(생략)  첨부 2  **화물무역 수입대금 송금관리 잠행방법**  **실시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 본 세칙은 화물무역 수입대금송금(이하 '수입대금송금')의 관리를 완벽화하기 위해, 《화물무역 수입대금 송금관리 잠행방법》(이하 ‘《방법》’)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제2조** 외환관리국은 법에 따라 수입단위나 은행이 처리하는 수입대금송금업무의 진실성과 합법성을 관리 감독한다.  **제2장 명부관리**  **제3조** 수입단위는 대외무역경영권을 취득한 후, 본 세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외환관리국에서 "수입단위 외환송금명부"(이하 '명부') 등기수속을 처리하고, 《화물무역 수입대금송금업무 처리확인서》(이하 《확인서》, 첨부1 참조)에 서명해야 한다.  **제4조** 본 세칙을 발표하여 실시하기 전에 이미 외환관리국에서 명부 등기수속을 처리한 수입단위는, 6개월 내에 《확인서》에 서명해야 한다. 《확인서》에 서명한 후, 외환관리국은 명부에 해당 단위를 자동적으로 포함시키고, 규정기한 내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외환관리국은 명부 포함 자격을 취소한다.  **제5조** 본 세칙을 발표하여 실시하기 전에 외환관리국에 가서 명부 등기수속을 처리하지 아니한 수입단위는, 명부 등기신청서 및 아래의 자료를 구비하여 외환관리국에서 명부 등기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1) 《대외무역경영자 비안등기표》, 법에 따라 등록등기를 처리할 필요가 없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대만/ 홍콩/마카오/화교투자기업 비준증서》 등의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기업법인 영업집조》 또는 《기업 영업집조》  (3) 《중화인민공화국 조직기구코드증》  (4)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수출입화물수화적송인 통관등록등기증서》  (5) 법정대표인이 서명하고 단위인감을 날인한 《확인서》  (6) 외환관리국이 요구하는 기타 자료.  외환관리국은 상술한 자료를 심사 확인한 후, 수입단위를 명부에 포함시키고, 은행에 명부정보를 발송한다.  **제6조** 수입단위 명부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안에, 관련 변경문건 또는 증명서를 소지하고 외환관리국에 가서 명부 변경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7조** 수입단위에 아래 상황 중의 하나가 발생한 경우, 외환관리국은 해당 단위를 명부에서 말소할 수 있다.  (1) 수입단위가 경영을 종료하거나 공상관리부문이 영업집조를 말소한 경우.  (2) 수입단위가 종료하거나 상무부문이 그 대외무역경영권을 취소한 경우.  (3) 외환관리국이 인증한 기타 정황.  수입단위가 말소된 후 명부 편입을 재 신청한 경우, 《방법》 제9조 명부에 포함된 수입단위 지도관리에 대한 규정에 따라 수입대금 송금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3장 수입대금 송금 관리**  **제8조** 수입단위는 은행에서 수입대금 송금을 처리할 시에, 결산방식과 자금흐름에 근거하여 수입대금송금 확인조사 증빙을 작성해야 하며, 경외에 외환을 송금한 경우 《경외송금신청서》 또는 《대외지급/인수통지서》(경내 외국고객계좌나 경외기구의 경내계좌로의 외환송금 포함)를 작성하고, 경내로 외환을 송금한 경우 《경내송금신청서》 또는 《경내지급/인수통지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9조** 수입단위는 수입대금 송금 확인조사 증빙에 해당 외환송금이 "수입확인조사항목으로 외환을 송금했는지" 여부를 정확히 주석표시하고, 실제 대외지급 거래성질에 근거하여 교역코드를 기입한다. 1건의 외환송금에 다양한 거래성질을 포함한 경우, 제 1란의 교역코드나 금액 및 화폐종류 등 정보는 무역 규모가 큰 순서에서 작은 순서로의 신고 원칙에 따른다. 수입대금 송금 신고는 국제수지 신고와 확인조사 전용정보 신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 수입단위는 그 화물의 실제 선적일에 따라 수입대금송금 확인조사 증빙에 "최종선적일"을 기입해야 한다. 선급금 업무의 경우, 최종 선적일은 계약에서 약정한 선적일을 기입한다. 1건의 수입대금송금이 다수 계약과 대응되는 경우, 그 최종 선적일은 마지막 1건의 화물 선적일을 기입하며, 경외의 공정에 사용된 물자나 중개무역 결제의 최종 선적일은 실제 또는 예상 외화수금일을 기입하고, 단계별 수금의 경우, 마지막 건의 외화수금일을 기재한다.  **제11조** 명부에 불 포함된 수입단위나 "C류 수입단위"의 수입대금 송금 및 외환관리국이 인증한 기타 외환 송금업무를 외환관리국에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은행은 수입단위를 위해 수입대금 송금 또는 신용장 개설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다.  **제12조** 은행은 수입단위를 위해 외환송금 수속을 처리할 시에, 수입단위가 기재한 수입대금 송금 확인조사 증빙을 심사하고, 다음의 규정에 따라 상응한 유효증빙과 상업전표를 심사해야 한다.  (1) 신용장 방식으로 결산할 경우, 수입계약이나 신용장 개설신청서를 심사한다.  신용장항목의 외환매도은행과 외환송금은행이 불일치한 경우, 외환송금(신용장 개설)은행은 외환매도은행이 이체한 자금의 입금을 확인한 후, 외환매도은행이 명시한 심사서 결과와 외화이체 증빙도 심사해야 한다.  (2) 신탁수취 방식으로 결산할 경우, 수입계약을 심사한다.  (3) 선급금 방식으로 결산할 경우, 수입계약이나 형식세금계산서를 심사한다.  (4) C.O.D 방식으로 결산할 경우, 《수입화물통관서 "무역방식" 분류 외환송금 코드표》(첨부2 참조)에 따라 관련 유효증빙과 상업증표를 심사한다.  "대외 외화구매송금 가능” 수입화물 통관서에 의해 외환송금을 처리할 경우, 수입계약이나 해관 "검사필인장"이 날인된 수입화물 통관서 원본(외환송금 증명페이지), 상업세금계산서를 심사한다. "대외 외화구매 송금 조건을 갖춘" 수입화물 통관서에 의해 외환송금을 처리할 경우, 수입화물통관서 무역방식에 근거, 상응한 증빙도 심사해야 한다. "대외 외화구매송금 불가" 수입화물 통관서는 이를 근거로 수입대금 송금을 처리할 수 없다.  (5) 경외위탁공정항목에서 무역대금을 대외에 지불한 경우, 상이한 결제방식에 근거하여 관련 증빙을 심사하는 이외에, 또한 공정도급협의나 공정도급자질증명 등도 심사해야 한다.  (6) 중개무역항목에서 무역대금을 대외결제한 경우, 상이한 결제방식에 근거하여 관련 증빙을 심사하는 이외에, '선지급 후수취' 항목은 수출계약도 심사해야 하며, '선수취 후지급' 항목은 수출계약이나 외화수금증빙도 심사해야 한다.  (7) 심가공결전항목(深加工结转项)에서 대외결제하거나 경내에서 외화로 결제한 경우, 상이한 결산방식에 근거하여 전창(转厂)계약 및 관련 증빙을 심사하는 이외에, 또한 무역방식이 "진료심가공" 또는 "내료심가공"인 수출화물 통관서(복사본)도 심사해야 한다.  상술한 수입대금 송금이, 대리수입에 속할 경우, 대리협의도 심사해야 하며, 본 세칙 제16조 규정에 근거하여 외환관리국에 사전 등기해야 한다면, 《수입대금 송금등기표》(이하 《등기표》, 첨부3 참조)에 의해 외환송금도 처리해야 한다.  은행이 수입단위를 위해 외환 송금수속을 처리할 시에, "중국전자항구- 수입대금송금시스템"을 통해 수입화물통관서 전자대장에 대한 온라인네트워크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  **제13조** 수입대금 송금을 처리한 후 계약의 취소 등 원인으로 발생한 송금환 환급은, 원칙적으로 환불자가 원 외환송금 수취인이어야 한다. 은행이 수입단위를 위해 관련 외화수금수속을 처리할 시에, 원 수입대금 송금 확인조사 증빙이나 원 수입계약, 송금환 환급협의, 기타 대응되는 송금환 환급 증명자료를 심사해야 한다. 환불자가 원 외환송금 수취인이 아닌 등 특수정황은, 환불자와 원 외환 송금 수취인과 불일치한 정황설명서도 심사해야 한다.  **제14조** 은행이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심사한 후, 수입화물 통관서 원본을 보관하고, 계약이나 세금계산서, 대리협의 등 증빙은 복사본을 보관한다. 분할 외환송금이 필요한 C.O.D업무는, 최종 외환 송금업무를 처리한 은행이 수입화물통관서 원본을 보관하고, 기타 외환 송금은행은 관련 은행이 외환송금액이나 통관서 외환 미 송금잔액, 외환송금일자를 기재하고 관련 은행 업무인감을 날인한 수입화물 통관서 복사본을 보관하며, 수입화물 통관서 원본에 당행의 외환송금액을 기재하고 당행의 업무인감을 날인한다.  **제15조** 아래 상황 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수입화물 통관서 경영단위와 외환송금단위가 불일치한 업무의 경우, 통관서 경영단위는 화물수입 이후 30일 내에, 신청서, 대리협의, 면세증명 또는 허가증 등 증명자료 및 수입화물 통관서를 소지하고 소재지 외환관리국에 가서 화물정보 변경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1) 수입단위가 외상투자기업과 기부항목의 수입을 대행할 경우  (2) 허가증, 수입쿼터, 특정상품 등기항목의 수입  (3) 외환관리국이 인증한 기타 정황.  **제16조** 다음의 외환 송금업무의 경우, 수입단위는 외환송금 또는 신용장 개설 이전에 신청서와 본 조에서 규정한 자료를 소지하고 외환관리국에 가서 수입대금 송금업무 등기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1) 명부에 불포함된 수입단위의 수입대금송금은, 상이한 결산방식에 따라 본 세칙 제12조에서 규정한 관련 증빙을 제공하는 이외에, 또한 본 세칙 제5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서 규정한 관련 증빙도 제출해야 한다.  (2) "C 수입단위"의 C.O.D업무의 경우, 외환관리국은 "중국전자항구- 수입대금송금시스템"을 통해 수입화물통관서 전자대장에 대한 온라인네트워크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전자대장에 대한 심사등록과 안건종결, 인쇄도 해야 한다.  (3) 기타 등기가 필요한 수입대금송금.  외환관리국은 수입단위가 제출한 상술한 자료를 심사한 후, "화물무역 수입대금송금업무인감"을 날인한 《등기표》를 발급하고, 관련 자료 복사본을 보관한다.  **제17조** 수입단위의 다음의 수입대금 송금업무는 수입화물 통관서 수입일 또는 외환송금일 이후 30일 내에 외환관리국에 건 별로 보고해야 한다.  (1) "B 수입단위"의 수입대금송금  (2) 일회계약항목의 외환송금과 실제도착화물 또는 외화수금 차액이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고 등가 10만USD를 초과한 수입대금송금  (3) 일회금액이 등가 10만USD를 초과하는 수입송금환 환급  (4) 수입단위를 명부에 포함시킨 후 수입대금송금업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수입대금송금  (5) 기타 건 별 보고가 필요한 수입대금송금.  수입단위는 무역외화수금/외환송금 확인조사시스템을 통해 수입대금송금과 대응되는 도착화물 또는 외화수금정보를 건 별로 보고하고 외환관리국의 피드백정보를 즉시 접수하며 인쇄한 《수입대금송금 건 별 조사보고서》(첨부4 참조)와 유효상업증빙이나 증명자료를 소지하고 외환관리국에 현장보고 해야 한다.  **제18조** 외환관리국이 결정한 "B류 수입단위"와 "C류 수입단위"의 수입대금송금업무는, 본 세칙 제36조와 제37조 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4장 비 현장검사와 모니터링경보**  **제19조** 외환관리국은 무역외화수금/외환송금시스템에 의해 수입단위 수입대금송금 데이터와 수입화물 데이터 또는 수입항목의 외화수금 데이터에 대한 총량대조를 하고, 비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외환관리국은 수입단위에 대한 주기적인 비 현장총량검사를 실시하고, 지역의 수입대금송금 모니터링정황에 근거하여, 비 현장총량검사를 수시로, 동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 수입단위 무역항목의 수입대금송금 데이터, 수입송금환 환급 데이터, 경외위탁공정 사용물자 및 중개무역 등 항목의 외화수금/외환송금 데이터, 무역방식이 "대외 외화구매송금 가능" 및 "대외 외화구매송금 조건을 갖춘" 수입화물 데이터, 기타 수입화물 데이터를 비 현장총량검사에 포함시킨다. 국가외환관리국은 지역, 업종, 경제유형 등 요인을 감안하여, 총량검사에 참여한 외환송금 데이터와 수입화물 데이터, 외화수금 데이터를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 수입대금 송금 모니터링경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화물총량검사와 도착화물 초과금액, 외환송금 초과금액 등 정황  (2) 중개무역, 경외위탁공정 등 외화수금 총량검사정황  (3) 수입송금환 환급, 수입무역 융자, 선급금, 대리수입 등 정황  (4) 지도기간 수입단위와 다국적기업, 관련 수입단위의 외환송금정황  (5) 자금흐름과 화물흐름추세 변동정황  (6) 수입대금 송금규모와 결제방식, 국가/지구 흐름 등 정황  (7) 수입화물 규모와 무역방식, 해관 가격신고 등 정황  (8) 자금흐름과 화물흐름의 국가/지구에 대한 편이도 등 정황.  (9) 기타 모니터링경보 관리를 실시해야 하는 정황.  **제5장 현장감독검사**  **제22조** 확인조사기간에 아래 상황 중의 하나가 발생한 수입단위에 대해, 외환관리국은 현장확인조사(이하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수입화물금액과 수입대금송금액의 비율이 80% 이하 또는 120% 이상, 초과 외환송금 또는 도착화물 초과금액이 등가 100만USD 이상인 경우.  (2) 중개무역, 경외위탁공정 외화수금액과 상응한 외환송금액의 비율이 90% 이하 또는 110% 이상, 초과외환송금 또는 초과외화수금이 등가 100만USD 이상인 경우.  (3) 1개월 수입송금환 환급이 5회 이상 또는 일회송금환 환급액이 등가 50만USD 이상인 경우.  (4) 외환관리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정황.  외환관리국은 총량검사결과와 기업의 자발보고정황에 근거, 지역·업종·경제유형 등 특징을 참조하여 상술한 사례 또는 금액지표를 조정하고,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수입단위를 정할 수 있다.  **제23조** 외환관리국은 수입단위에 보고서를 요구하거나 수입단위 법정대표인 또는 수권자와 인터뷰를 가지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외환관리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방식을 사용하여 수입단위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 외환관리국은 현장검사가 필요한 수입단위에, 《현장검사 통지서》(첨부5 참조)를 발송한다.  **제25조** 수입단위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사실대로 제출하고, 자발적으로 외환관리국 현장검사업무에 협력해야 한다.  (1) 외환관리국이 수입단위보고를 요구할 경우, 수입단위는 《현장검사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업무일 내에 외환관리국에 법정대표인 또는 수권자가 서명하고 단위인감을 날인한 서면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외환관리국이 수입단위 법정대표인 또는 수권자와 인터뷰를 가질 경우, 수입단위 법정대표인 또는 수권자는 《현장검사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외환관리국에 정황을 설명해야 한다.  (3) 외환관리국이 현장조사를 할 경우, 수입단위는 《현장검사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업무일 내에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외환관리국의 현장조사인원 업무에 협력해야 한다.  (4) 외환관리국이 기타 현장검사방식을 사용할 경우, 수입단위는 외환관리국의 요구에 따라 관련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제26조** 외환관리국은 수입단위가 제공한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수입대금송금업무의 진실성과 합법성을 심사하며, 수입단위 현장검사결과를 결정해야 한다.  **제27조** 외환관리국은 은행의 수입대금 송금업무 처리에 대한 비 현장검사정황에 근거, 증빙 조사열람, 은행에 대한 관련 자료 보충요구, 업무책임자 인터뷰 등 방식을 통해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은행은 7 업무일 내에 관련 자료를 사실대로 제출하고, 자발적으로 외환관리국의 현장검사업무에 협력해야 한다.  **제28조** 현장검사에서 외환관리규정 위반혐의가 발견된 수입단위와 은행은, 외환검사부처에 이송한다.  **제6장 분류관리**  **제29조** 외환관리국은 주기적으로 명부 수입단위에 대한 심사분류를 실시하고, 비 현장총량검사 및 모니터링경보를 바탕으로, 현장검사정황과 수입단위의 외환관리규정 준수 등 정황에 결합하여, 수입단위를 "A류 수입단위", "B류 수입단위", "C류 수입단위"로 나뉜다.  **제30조** 외환관리국은 수입단위와 은행에 심사분류결과를 발송하고, 심사분류결과 유효기한은 6개월이다.  **제31조** 아래 상황 중의 하나에 해당되고 이유도 정당하지 않은 수입단위는, "B류 수입단위"에 속해야 한다.  (1) 현장검사 결과, 수입대금송금업무에 본 세칙 제22조에서 규정한 상황의 하나가 발생하고 사실에 속할 경우.  (2) 수입대금 송금업무에 본 세칙 제22조에서 규정한 상황의 하나가 발생하고 본 세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외환관리국에 관련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  (3) 본 세칙의 규정에 따라 외환관리국에 건 별로 보고하지 않거나 수입대금 송금업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4) 외화도피/외화암거래/외환사기 등 외환관리규정 위반행위가 엄중하여, 외환관리국의 입안조사를 받은 경우.  (5) 외환관리국이 인증하는 기타 정황.  **제32조** 아래 상황 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수입단위는, "C류 수입단위"로 분류돼야 한다.  (1) 외환관리국이 현장검사를 실시할 시에, 본 세칙 제25조 규정을 위반하고, 확인조사를 거부하거나 협력을 거부한 경우.  (2)　외화도피/외화암거래/외환사기 등 외환관리규정 위반행위가 엄중하여, 외환관리국의 처벌을 받거나 사법기관의 입안조사를 받은 경우.  (3) 외환관리국이 인증하는 기타 정황.  **제33조** "B류 수입단위" 또는 "C류 수입단위"에 불포함된 수입단위는 "A류 수입단위"로 분류한다.  **제34조** 외환관리국은 "A류 수입단위"의 수입대금송금업무에 대해 편리화 관리를 실시하며, "A류 수입단위"는 《방법》 및 본 세칙의 규정에 따라 수입대금 송금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한다.  **제35조** 외환관리국은 "B류 수입단위"와 "C류 수입단위"를 결정하기 전에, 《심사분류통지서》(첨부6 참조)를 서면형식으로 관련 수입단위에 발송해야 한다. 이의가 있다면, 수입단위는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 업무일 내에 외환관리국에 서면정황설명서 및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설명해야 한다.  **제36조** 외환관리국은 "B류 수입단위"에 대해 다음의 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모든 수입대금송금업무는 본 세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사후 건 별 보고를 실행한다.  (2) 일회선급금액이 등가 5만USD를 초과한 경우, 은행의 전신확인부호 대조를 거쳐 외국투자은행이 발급한 선급금 은행신용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수입단위 법정대표인 또는 수권자와 인터뷰를 가지고 리스크를 경고한다.  (4) 외환관리국이 규정한 기타 관리조치.  **제37조** 외환관리국은 "C류 수입단위"에 대해 다음의 관리를 실시한다.  (1) 모든 수입대금 송금업무는 본 세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사전등기를 실행한다.  (2) 신용장, 신탁수취, 선급금 등 방식으로 외환송금을 하지 못한다.  (3) 외환관리국이 규정한 기타 관리조치.  **제7장 벌 칙**  **제38조** 수입단위와 은행은 본 세칙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대금 송금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한 경우, 외환관리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이하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9조** 수입단위에 아래 행위 중의 하나가 발생한 경우, 외환관리국은 《조례》 제48조 규정에 근거,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하며, 30만RMB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외환관리국의 법에 따른 현장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2) 수입대금송금업무 처리에서 규정에 따라 유효증빙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증빙이 진실하지 않은 경우.  (3) 등기가 필요한 수입대금 송금업무를 규정에 따라 외환관리국에 등기하지 않은 경우.  (4) 건 별 보고가 필요한 수입대금 송금업무를, 규정에 따라 보고하지 않은 경우.  (5) 수입대금송금 확인조사정보를 부실, 누락, 오류 보고한 경우.  (6) 기타 《방법》 및 본 세칙을 위반한 행위.  **제40조** 은행에 아래 행위 중의 하나가 발생한 경우, 외환관리국은 《조례》 제47조 규정에 근거,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20만RMB 이상 및 100만RMB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본 세칙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유효증빙 및 상업증표를 심사하지 않고, 수입단위의 수입대금송금업무를 처리한 경우.  (2) 수입대금 송금 등기업무범위에 속하지만, 외환관리국이 발급한 《등기표》에 의해 수입단위의 수입대금 송금업무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  (3) 외환관리국이 공표한 수입단위 분류관리조치에 따라 수입단위의 수입대금 송금업무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  (4) 기타 《방법》 및 본 세칙을 위반한 행위.  **제41조** 은행에 아래 행위 중의 하나가 발생한 경우, 외환관리국은 《조례》 제48조 규정에 근거,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하며, 30만RMB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수입대금 송금 확인조사증빙 및 전자정보를 오류, 누락 보고하거나 허위신고, 또는 지연보고 한 경우.  (2) 외환관리국의 법에 따른 현장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3) 외환관리국이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 본 세칙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유효증빙 및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가짜 증빙 및 자료를 제출한 경우.  (4) 기타 《방법》 및 본 세칙을 위반한 행위.  **제8장 부 칙**  **제42조** 수입대금 송금초과액 또는 도착화물 초과금액이라 함은 수입대금송금액과 수입도착화물금액의 차액을 말한다.  **제43조** 본 세칙에서 언급한 상업증표, 유효증빙, 증명자료의 원본 또는 복사본 및 신청서, 《등기표》, 《수입대금송금 건 별 검사보고서》, 《심사분류 통지서》, 《현장검사 통지서》 원본은, 중요한 업무 당안으로서 보관하여 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외환관리국이나 수입단위, 은행은 관련 업무 당안을 적절히 보관하고, 5년간 조사대비용으로 보관해야 한다.  **제44조** 본 세칙에서 규정한 비율과 금액, 기한은 해당 금액을 포함하며, 본 세칙에서 규정한 일자는 자연일(업무일로 명확히 규정한 경우 제외)이다.  **제45조** 수입단위가 수입항목의 커미션이나 무역항목의 배상금, 무역 종속비용을 지급한 경우, 서비스무역 외환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6조** 수입단위가 지급한 선급금과 연기 지급금은 본 세칙과 무역신용대출 등기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7조** 본 세칙은 국가외환관리국이 해석을 책임지고, 2010년 12월 1일부터 실시한다.  첨부1: 화물무역 수입대금송금업무 처리확인서  첨부2: 수입화물통관서 "무역방식" 분류 외환송금 코드표  첨부3: 수입대금 송금등기표  첨부4: 수입대금송금 건 별 검사보고서  첨부5: 국가외환관리국 XX분(지)국 현장검사통지서  첨부6: 국가외환관리국 xx분(지)국 심사분류통지서 |  | **国家外汇管理局关于实施进口**  **付汇核销制度改革**  **有关问题的通知**  汇发【2010】57号  国家外汇管理局各省、自治区、直辖市分局、外汇管理部，深圳、大连、青岛、厦门、宁波市分局；各中资外汇指定银行：  为加快进出口核销制度改革，实现货物贸易外汇管理向总量核查、非现场核查和主体监管转变，国家外汇管理局自2010年5月1日开始在天津、江苏、山东、湖北、内蒙古、福建以及青岛等七个地区进行货物贸易进口付汇核销制度改革（以下简称进口核销改革）试点。在此基础上，国家外汇管理局决定在全国范围内推广实施进口核销改革。现将有关事项通知如下：  一、进口核销改革的目标是以真实性原则为基础，坚持以人为本，通过转变管理方式和手段，促进贸易便利化，降低企业和银行经营成本，适应对外贸易的新形势和新发展；通过全面掌握和比对企业的贸易资金流和货物流信息，加强持续和动态的监测分析，有效遏制各类违法违规跨境资金的流动。为保证这一目标的实现，改革的基本思路是实现进口付汇管理由逐笔核销向总量核查、由现场核销向非现场核查、由行为审核向主体监管的转变，外汇局全面采集企业进口付汇及到货的完整信息，依托信息系统进行非现场总量对比，在此基础上通过非现场监测预警对企业进口付汇情况监测分析，及时识别异常行为；根据非现场监测预警、现场核查等情况，对企业实施考核分类。  二、《货物贸易进口付汇管理暂行办法》及其实施细则（以下统称《暂行办法》，见附件1、2）从2010年12月1日开始施行。自实施之日起，进口单位应按《暂行办法》规定办理进口付汇业务；银行应按《暂行办法》规定为进口单位办理进口付汇业务。  三、银行须于2010年11月30日前完成与贸易收付汇核查系统（以下简称核查系统）的连通配置工作，自《暂行办法》实施之日起，通过核查系统查询进口单位名录、进口付汇登记表以及分类考核级别等相关信息。  四、进口核销改革是推进贸易便利化的重大举措，各分局应当高度重视，统筹安排，全力做好改革工作：  （一）统一认识，加强对改革的组织领导。各分局应充分认识进口核销改革的重大意义，成立以主管局长任组长的改革领导小组，负责辖内改革工作的领导和监督，协调相关部门积极支持配合改革工作；改革领导小组下设工作小组，包含业务和技术人员，负责辖内改革实施、政策宣传解释、业务和技术支持以及信息反馈等具体工作。  （二）根据《暂行办法》有关规定，实施总量核查、动态监测和分类管理，提高监管有效性。  （三）加强宣传和培训。在总局的统一部署下，采取多种形式做好宣传和解释工作，引导并督促银行、进口单位尽快了解改革思路及政策意图；对外汇局工作人员、辖内银行以及进口单位开展各种形式的培训，使银行、进口单位尽快熟悉新政策下的业务操作，确保改革措施落实到位。  （四）做好辖内核查系统企业端和银行端软件安装和调试等技术支持工作。  （五）及时上报执行情况，按月向总局上报进口核销改革实施情况。  五、应急措施  核查系统若出现数据不能导入、中断等暂时无法正常运行的问题，各分局应立即告知总局核销改革办公室进行处理，并对出现的问题进行记录。期间，外汇局负责办理的相关进口付汇业务应建立台账，做好业务记录。  六、核查系统登录方式  核查系统外汇局版地址：  http://100.1.63.3:9001/SafeChk/  银行版地址：  http://asone.safe:9101/asone/；  企业版地址：  http://asone.safesvc.gov.cn/asone  总局核销改革办公室联系方式:  联系电话： 010-68402546 010-68402547  传 真： 010-68402594  联系邮箱：（内网）[tradebus@mail.safe](mailto:tradebus@mail.safe)；  tradetech@mail.safe  （外网）[tradebus@mail.safe.gov.cn](mailto:tradebus@mail.safe.gov.cn)；  [tradetech@mail.safe.gov.cn](mailto:tradetech@mail.safe.gov.cn)  本通知自发布之日起，各分局（外汇管理部）应开始相关准备工作，并将本通知尽快转发辖内中心支局（支局）、银行及进口单位。对执行过程中产生的问题，进口单位和银行应及时向所在地外汇局反馈，各分局（外汇管理部）应当及时向总局反馈。  特此通知。  二〇一〇年十月二十日  附件一：《货物贸易进口付汇管理暂行办法》  <http://www.safe.gov.cn/model_safe/laws/pic/20101027094839626.doc>  附件二：《货物贸易进口付汇管理暂行办法实施细则》  附件1  **货物贸易进口付汇管理暂行办法**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进一步完善货物贸易进口付汇（以下简称进口付汇）管理，推进贸易便利化，促进涉外经济发展，根据《中华人民共和国外汇管理条例》相关规定，制定本办法。  **第二条** 国家外汇管理局及其分支机构（以下简称外汇局）依法对进口付汇的真实性与合规性进行监督管理。  **第三条** 进口付汇管理按照属地管理原则进行，外汇局对辖内进口单位和经营外汇业务的金融机构（以下简称银行）进行监管。  **第四条** 国家对货物贸易项下国际支付不予限制。进口单位的进口付汇应当具有真实、合法的交易基础，银行应对交易单证的真实性及其与进口付汇的一致性进行合理审查。  **第五条** 外汇局对进口单位进口付汇情况进行非现场总量核查和监测预警，对异常资金流动情况进行现场核实调查（以下简称现场核查）。  **第六条** 外汇局对进口单位实行分类管理，在非现场总量核查及监测预警的基础上，结合现场核查情况和进口单位遵守外汇管理规定等情况，将进口单位分为“A类进口单位”、“B类进口单位”和“C类进口单位”。分类管理内容包括进口付汇审核、进口付汇登记以及逐笔报告等业务环节。  **第七条** 进口单位和银行应按本办法及有关规定办理进口付汇业务，并协助、配合外汇局现场核查。  **第二章 名录管理**  **第八条** 进口单位依法取得对外贸易经营权后，应当持有关资料到外汇局办理“进口单位付汇名录”（以下简称名录）登记手续，并签署进口付汇业务办理确认书；进口单位登记信息发生变更的，应当到外汇局办理变更登记手续；进口单位终止经营或被取消对外贸易经营权的，应当到外汇局办理注销登记手续。  **第九条** 进口单位列入名录后，外汇局对其自发生进口付汇业务之日起三个月内的进口付汇业务进行辅导管理。  **第十条** 外汇局统一向银行发布名录。不在名录的进口单位，银行不得直接为其办理进口付汇业务。  **第十一条** 对于已不具备名录登记条件的进口单位，外汇局可将其从名录中注销。  **第三章 进口付汇管理**  **第十二条** 本办法所称进口付汇包括：  （一）向境外支付进口货款；  （二）向境内保税监管区域、离岸账户以及境外机构境内账户支付进口货款或深加工结转项下境内付款；  （三）其他具有对外付汇性质的货物贸易项下付款。  **第十三条** 进口单位应当根据结算方式、贸易方式以及资金流向，按规定凭相关单证在银行办理进口付汇业务。  进口单位应当按规定进行进口付汇核查信息申报。银行应当按规定向外汇局报送相关信息。  **第十四条** 付汇单位与合同约定进口单位、进口货物报关单经营单位应当一致。代理进口业务，应当由代理方负责进口、购付汇。国家另有规定的除外。  **第十五条** 外汇局对不在名录进口单位和“C类进口单位”的进口付汇实行事前登记管理。进口单位应当按规定到外汇局办理进口付汇业务登记。银行应当凭外汇局出具的登记证明和相关单证为进口单位办理进口付汇业务。  **第十六条** 外汇局对辅导期内进口单位和“B类进口单位”的进口付汇以及外汇局认定的其他业务实行事后逐笔报告管理。进口单位进口付汇后，需向外汇局逐笔报告其进口付汇和对应的到货或收汇信息，并提供相关单证或证明材料。  **第四章 非现场核查与监测预警**  **第十七条** 外汇局对进口付汇数据和进口货物数据（或进口项下收汇数据）进行非现场总量比对，核查进口单位进口付汇的真实性和一致性。  **第十八条** 外汇局以进口单位为主体，参考地区、行业、经济类型等特点，设置监测预警指标体系，对进口付汇和货物进口及进口项下收汇情况进行监测分析，实施风险预警，识别异常交易和主体。  **第十九条** 外汇局可根据宏观经济形势和国际收支平衡需要调整监测预警内容。  **第五章 现场核查**  **第二十条** 外汇局根据非现场核查及监测预警的结果，对于总量核查指标超过规定范围或存在其他异常情况的进口单位进口项下外汇收支业务实施现场核查。  **第二十一条** 外汇局可采取要求被核查单位报告、约见进口单位法定代表人或其授权人、现场调查等方式,对进口单位进行现场核查。  **第二十二条** 外汇局可对银行办理进口付汇业务的合规性与报送相关信息的及时性、准确性和完整性实施现场核查。  **第二十三条** 进口单位和银行应当协助、配合外汇局现场核查，及时、如实提供相关资料。  **第六章 分类管理**  **第二十四条** “B类进口单位”和“C类进口单位”确定前，外汇局应通知相关进口单位。进口单位如有异议，可在收到书面通知之日起7个工作日内向外汇局申述。  **第二十五条** 外汇局向银行和进口单位发布对进口单位的分类管理信息。  **第二十六条** 国家外汇管理局可根据国际收支形势和外汇管理需要，调整考核分类的期限、频率、标准以及适用的管理措施。  **第七章 附 则**  **第二十七条** 进口单位是指具有对外贸易经营权的境内机构。  **第二十八条** 银行和进口单位违反本办法以及其他相关规定办理进口付汇业务的，由外汇局依据《中华人民共和国外汇管理条例》等相关规定处罚。  **第二十九条** 具有对外贸易经营权的保税监管区域内进口单位经营非保税货物的进口付汇、具有对外贸易经营权的个人办理进口付汇业务参照适用本办法。国家外汇管理局另有规定的，从其规定。  **第三十条** 本办法由国家外汇管理局负责解释。  **第三十一条** 本办法自2010年12月1日起施行，以前法规与本办法相抵触的，按照本办法执行。自本办法实施之日起，附件所列法规废止。  附件: 需要废止的法规目录  附件2  **货物贸易进口付汇管理暂行办法**  **实施细则**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完善货物贸易进口付汇（以下简称进口付汇）管理，依据《货物贸易进口付汇管理暂行办法》（以下简称《办法》），制定本细则。  **第二条** 外汇局依法对进口单位、银行办理进口付汇业务的真实性和合规性进行监督管理。  **第二章 名录管理**  **第三条** 进口单位取得对外贸易经营权后，应按本细则第五条规定到外汇局办理“进口单位付汇名录”（以下简称名录）登记手续，并签署《货物贸易进口付汇业务办理确认书》（以下简称《确认书》，见附1）。  **第四条** 本细则发布实施前已在外汇局办理名录登记手续的进口单位，应在六个月内签署《确认书》。签署《确认书》后，外汇局将其自动列入名录，未在规定期限内签署的，外汇局将取消其名录资格。  **第五条** 本细则发布实施前未在外汇局办理名录登记手续的进口单位，需持名录登记申请书及下列材料到外汇局办理名录登记手续：  （一）《对外贸易经营者备案登记表》，依法不需要办理备案登记的提交《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或《中华人民共和国台、港、澳、侨投资企业批准证书》等相关证明材料；  （二）《企业法人营业执照》或《企业营业执照》；  （三）《中华人民共和国组织机构代码证》；  （四）《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收发货人报关注册登记证书》；  （五）法定代表人签字、加盖单位公章的《确认书》；  （六）外汇局要求提供的其他材料。  外汇局审核上述材料无误后，将进口单位列入名录，并向银行发布名录信息。  **第六条** 进口单位名录信息发生变更的，应当在变更之日起30日内，持相关变更文件或证明到外汇局办理名录变更手续。  **第七条** 进口单位发生下列情况之一的，外汇局可将其从名录中注销：  （一）进口单位终止经营或被工商管理部门注销、吊销营业执照的；  （二）进口单位终止或被商务部门取消对外贸易经营权的；  （三）外汇局认定的其他情况。  进口单位注销后重新申请进入名录的，应按照《办法》第九条关于列入名录进口单位辅导期管理规定办理进口付汇业务。  **第三章 进口付汇管理**  **第八条** 进口单位在银行办理进口付汇时，应根据结算方式和资金流向填写进口付汇核查凭证，向境外付汇的应填写《境外汇款申请书》或《对外付款/承兑通知书》（包括向境内离岸账户、境外机构境内账户付汇），向境内付汇的应填写《境内汇款申请书》或《境内付款/承兑通知书》。  **第九条** 进口单位应在进口付汇核查凭证上准确标注该笔付汇“是否为进口核查项下付汇”，并根据实际对外付款交易性质填写交易编码。对一笔付汇涵盖多种交易性质的，第一栏交易编码、金额以及币种等信息按贸易从大原则申报。进口付汇申报按照国际收支申报和核查专用信息申报有关规定办理。  **第十条** 进口单位应按其货物实际装运日期填写进口付汇核查凭证中的“最迟装运日期”。预付货款业务，其最迟装运日期填写合同约定装运日期；一笔进口付汇对应多份合同的，其最迟装运日期填写最迟一笔货物装运日期；境外工程使用物资、转口贸易支付，其最迟装运日期填写实际或预计收汇日期，如为分阶段收款，填写最迟一笔收汇日期。  **第十一条** 对不在名录进口单位、“C类进口单位”的进口付汇以及外汇局认定的其他付汇业务，未经外汇局登记，银行不得为进口单位办理进口付汇或开立信用证等相关业务。  **第十二条** 银行为进口单位办理付汇手续时，需审查进口单位填写的进口付汇核查凭证，并按以下规定审查相应有效凭证和商业单据：  （一）以信用证方式结算的，审查进口合同、开证申请书。  对于信用证项下售汇银行与付汇银行不一致的，付汇（开证）银行在核实售汇银行划转的资金到账后，还需审查经售汇银行签注的审单结论和外汇划转凭证；  （二）以托收方式结算的，审查进口合同；  （三）以预付货款方式结算的，审查进口合同、形式发票；  （四）以货到付款方式结算的，按《进口货物报关单“贸易方式”分类付汇代码表》（见附2）审查相关有效凭证和商业单据。  对于凭“可以对外售付汇”进口货物报关单付汇的，审查进口合同、加盖海关“验讫章”的进口货物报关单正本（付汇证明联）、商业发票；对于凭“有条件对外售付汇”进口货物报关单付汇的，还需根据进口货物报关单的贸易方式，审查相应凭证； “不得对外售付汇”进口货物报关单不能凭以办理进口付汇；  （五）境外承包工程项下对外支付贸易货款的，除依据不同结算方式审查有关单证外，还需审查工程承包协议、工程承包资质证明等；  （六）转口贸易项下对外支付贸易货款的，除依据不同结算方式审查有关单证外，先支后收项下还需审查出口合同，先收后支项下还需审查出口合同、收汇凭证；  （七）深加工结转项下对外付汇或境内以外汇结算的，除依据不同结算方式审查转厂合同及有关单证外，还需审查贸易方式为“进料深加工”或“来料深加工”的出口货物报关单（复印件）。  对于上述进口付汇，属于代理进口的，还需审核代理协议；依据本细则第十六条规定需外汇局事前登记的，还需凭《进口付汇登记表》（以下简称《登记表》，见附3）办理付汇。  银行为进口单位办理付汇手续时，无需通过“中国电子口岸-进口付汇系统”对进口货物报关单电子底账进行联网核查。  **第十三条** 对于进口付汇后因合同取消等原因产生的退汇业务，原则上退款人应当为原付汇收款人。银行为进口单位办理相关收汇手续时，应当审查原进口付汇核查凭证、原进口合同、退汇协议以及其他对应退汇证明材料。对于退款人不是原付汇收款人等特殊情况，还需审查退款人与原付汇收款人不一致的情况说明。  **第十四条** 银行按规定审查相关资料后，留存进口货物报关单正本，合同、发票、代理协议等单证留存复印件。对于需要分次付汇的货到付款业务，由办结最后一次付汇业务的银行留存进口货物报关单正本，其他付汇银行留存有相关银行签注付汇金额、报关单未付汇余额以及付汇日期并加盖相关银行业务公章的进口货物报关单复印件，并在进口货物报关单正本上签注本行付汇金额并加盖本行业务公章。  **第十五条** 下列情况之一的进口货物报关单经营单位与付汇单位不一致业务，报关单经营单位需在货物进口后30日内，持申请书、代理协议、免税证明或许可证等证明材料以及进口货物报关单到所在地外汇局办理货物信息变更手续：  （一）进口单位代理外商投资企业和捐赠项下进口；  （二）许可证、进口配额、特定商品登记项下进口；  （三）外汇局认定的其他情况。  **第十六条** 下列付汇业务，进口单位应在付汇或开立信用证前持申请书和本条规定的材料到外汇局办理进口付汇业务登记手续：  （一）不在名录进口单位的进口付汇，按照不同结算方式除提供本细则第十二条规定的有关单证外，还需提供本细则第五条第（一）、（二）、（三）项规定的有关单证；  （二）“C类进口单位”的货到付款业务，外汇局还需通过“中国电子口岸-进口付汇系统”对进口货物报关单电子底账进行联网核查，核注、结案及打印相关电子底账；  （三）其他需登记的进口付汇。  外汇局审核进口单位提交的上述材料后，为其出具加盖“货物贸易进口付汇业务章”的《登记表》，并留存相关资料复印件。  **第十七条** 进口单位下列进口付汇业务应在进口货物报关单进口日期或收付汇日期后30日内向外汇局逐笔报告：  （一）“B类进口单位”的进口付汇；  （二）单笔合同项下付汇与实际到货或收汇差额超过合同金额10%且金额超过等值10万美元的进口付汇；  （三）单笔金额超过等值10万美元的进口退汇；  （四）进口单位列入名录后自发生进口付汇业务之日起三个月内的进口付汇；  （五）其他需进行逐笔报告的进口付汇。  进口单位应当通过贸易收付汇核查系统逐笔报告其进口付汇和对应的到货或收汇信息并及时接收外汇局反馈信息，持打印的《进口付汇逐笔核查报告表》（见附4）和相关有效商业单证或证明材料到外汇局现场报告。  **第十八条** 外汇局确定的“B类进口单位”和“C类进口单位”的进口付汇业务，还应遵守本细则第三十六条和第三十七条规定。  **第四章 非现场核查与监测预警**  **第十九条** 外汇局依托贸易收付汇核查系统对进口单位进口付汇数据和进口货物数据或进口项下收汇数据进行总量比对，实施非现场核查。外汇局对进口单位进行定期非现场总量核查，也可根据地区进口付汇监测情况，随时、动态进行非现场总量核查。  **第二十条** 进口单位贸易项下的进口付汇数据、进口退汇数据、境外承包工程使用物资以及转口贸易等项下的收付汇数据，贸易方式为“可以对外售付汇”和“有条件对外售付汇”的进口货物数据以及其他进口货物数据纳入非现场总量核查。国家外汇管理局可参考地区、行业、经济类型等因素，对参与总量核查的付汇数据、进口货物数据以及收汇数据进行调整。  **第二十一条** 进口付汇监测预警的主要内容包括：  （一）货物总量核查、多到货金额以及多付汇金额等情况；  （二）转口贸易、境外承包工程等收汇总量核查情况；  （三）进口退汇、进口贸易融资、预付货款以及代理进口等情况；  （四）辅导期内进口单位、跨国公司以及关联进口单位的付汇情况；  （五）资金流与货物流趋势变动情况；  （六）进口付汇规模、结算方式以及国家/地区流向等情况；  （七）进口货物规模、贸易方式以及海关价格申报等情况；  （八）资金流向与货物流向国家/地区偏离度等情况；  （九）其他应实施监测预警管理的情况。  **第五章 现场监督核查**  **第二十二条** 对核查期内存在下列情况之一的进口单位，外汇局可实施现场核实调查（以下简称现场核查）：  （一）进口货物金额与进口付汇金额的比率小于80%或大于120%，且多付汇或多到货金额大于等值100万美元；  （二）转口贸易、境外承包工程收汇金额与相应付汇金额的比率小于90%或大于110%，且多付汇或多收汇金额大于等值100万美元；  （三）单月进口退汇频次大于5次或单笔退汇金额大于等值50万美元；  （四）外汇局认为有必要的其他情况。  外汇局可根据总量核查结果和企业主动报告情况，参考地区、行业、经济类型等特点对上述比例或金额指标进行调整，确定实施现场核查的进口单位。  **第二十三条** 外汇局可采取要求进口单位报告、约见进口单位法定代表人或其授权人、现场调查以及外汇局认为必要的其他方式对进口单位进行现场核查。  **第二十四条** 外汇局对需现场核查的进口单位，发出《现场核查通知书》（见附5）。  **第二十五条** 进口单位应按下列规定如实提供相关资料，并主动配合外汇局现场核查工作：  （一）外汇局要求进口单位报告的，进口单位应在收到《现场核查通知书》之日起15个工作日内向外汇局提交由法定代表人或其授权人签字并加盖单位公章的书面报告及相关资料；  （二）外汇局约见进口单位法定代表人或其授权人的，进口单位法定代表人或其授权人应在收到《现场核查通知书》之日起15个工作日内到外汇局说明情况；  （三）外汇局进行现场调查的，进口单位应在收到《现场核查通知书》之日起15个工作日内准备好相关资料，配合外汇局现场调查人员工作；  （四）外汇局采取其他现场核查方式的，进口单位应按外汇局要求做好相关工作。  **第二十六条** 外汇局应核实进口单位提供的相关资料，审查进口付汇业务的真实性与合规性，确定进口单位现场核查结果。  **第二十七条** 外汇局根据对银行办理进口付汇业务的非现场核查情况，通过采取调阅凭证、要求银行补充报送相关资料、约见业务负责人等方式对银行实施现场核查。银行应在7个工作日内如实提供相关资料，主动配合外汇局现场核查工作。  **第二十八条** 对于现场核查中发现涉嫌违反外汇管理规定的进口单位和银行，将移交外汇检查部门。  **第六章 分类管理**  **第二十九条** 外汇局定期对名录进口单位进行考核分类，在非现场总量核查及监测预警的基础上，结合现场核查情况和进口单位遵守外汇管理规定等情况，将进口单位分为“A类进口单位”、“B类进口单位”和“C类进口单位”。  **第三十条** 外汇局向进口单位和银行发布考核分类结果，考核分类结果有效期为半年。  **第三十一条** 存在下列情况之一且无正当理由的进口单位，应被列为“B类进口单位”：  （一）经现场核查，进口付汇业务存在本细则第二十二条规定情况之一且情况属实的；  （二）进口付汇业务存在本细则第二十二条规定情况之一且未按本细则第二十五条规定如实向外汇局提供相关资料的；  （三）未按本细则规定向外汇局逐笔报告或办理登记进口付汇业务的；  （四）存在逃套骗汇等严重违反外汇管理规定的行为，受到外汇局立案调查的；  （五）外汇局认定的其他情况。  **第三十二条** 存在下列情况之一的进口单位，应被列为“C类进口单位”：  （一）外汇局实施现场核查时，违反本细则第二十五条规定，拒不接受或拒不配合核查的；  （二）存在逃套骗汇等严重违反外汇管理规定的行为，受到外汇局处罚或被司法机关立案调查的；  （三）外汇局认定的其他情况。  **第三十三条** 未被列为“B类进口单位”或“C类进口单位”的进口单位，为“A类进口单位”。  **第三十四条** 外汇局对“A类进口单位”进口付汇业务实施便利化管理，“A类进口单位”按《办法》及本细则规定正常办理进口付汇业务。  **第三十五条** 外汇局在确定“B类进口单位”和“C类进口单位”前，将《考核分类通知书》（见附6）以书面形式通知相关进口单位。如有异议，进口单位可自收到书面通知之日起7个工作日内向外汇局提交书面情况说明及相关证明材料进行申述。  **第三十六条** 外汇局对“B类进口单位”可以实施以下管理：  （一）所有进口付汇业务按照本细则第十七条规定实行事后逐笔报告；  （二）单笔预付货款金额超过等值5万美元的，需提供经银行核对密押的外方银行出具的预付货款保函；  （三）约见进口单位法定代表人或其授权人进行风险警示谈话；  （四）外汇局规定的其他管理措施。  **第三十七条** 外汇局对“C类进口单位”实施以下管理：  （一）所有进口付汇业务按照本细则第十六条规定实行事前登记;  （二）不得以信用证、托收、预付货款等方式付汇；  （三）外汇局规定的其他管理措施。  **第七章 罚 则**  **第三十八条** 进口单位和银行应当按照本细则及其他相关规定办理进口付汇业务，对违反规定的，由外汇局依据《中华人民共和国外汇管理条例》（以下简称《条例》）等相关规定处罚。  **第三十九条** 进口单位有下列行为之一的，由外汇局依据《条例》第四十八条规定，责令改正，给予警告，处30万元以下罚款:  （一）拒绝、阻碍外汇局依法实施现场核查；  （二）办理进口付汇业务未按照规定提交有效单证或者提交的单证不真实；  （三）对于需登记的进口付汇业务，未按规定到外汇局办理登记；  （四）对于需逐笔报告的进口付汇业务，未按规定进行报告；  （五）瞒报、漏报、错报进口付汇核查信息；  （六）其他违反《办法》及本细则的行为。  **第四十条** 银行有下列行为之一的，由外汇局依据《条例》第四十七条规定，责令限期改正，没收违法所得，并处2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  （一）未按照本细则及相关规定审核有效凭证及商业单据，为进口单位办理进口付汇业务；  （二）属进口付汇登记业务范围，但未凭外汇局核发的《登记表》为进口单位办理进口付汇业务；  （三）未按照外汇局公布的进口单位分类管理措施为进口单位办理进口付汇业务；  （四）其他违反《办法》及本细则的行为。  **第四十一条** 银行有下列行为之一的，由外汇局依据《条例》第四十八条规定，责令改正，给予警告，处30万元以下罚款:  （一）错报、漏报、虚报、迟报进口付汇核查凭证以及电子信息；  （二）拒绝、阻碍外汇局依法实施现场核查；  （三）在外汇局实施现场核查中未按照本细则及相关规定提供有效单证及资料或提供虚假单证及资料；  （四）其他违反《办法》及本细则的行为。  **第八章 附 则**  **第四十二条** 进口多付汇或多到货金额是指进口付汇金额与进口到货金额的差额。  **第四十三条** 本细则中涉及的相关商业单据、有效凭证、证明材料的原件或复印件及申请书、《登记表》、《进口付汇逐笔核查报告表》、《考核分类通知书》以及《现场核查通知书》的原件，均应作为重要业务档案留存备查。外汇局、进口单位以及银行应妥善保管相关业务档案，留存5年备查。  **第四十四条** 本细则规定的比率、金额、期限均含本值，本细则规定的日期为自然日（明确规定为工作日的除外）。  **第四十五条** 进口单位支付进口项下佣金、贸易项下赔款以及贸易从属费用，按照服务贸易外汇管理有关规定办理。  **第四十六条** 进口单位支付预付货款和延期付款按照本细则和贸易信贷登记管理有关规定办理。  **第四十七条** 本细则由国家外汇管理局负责解释，自2010年12月1日起施行。  附1：货物贸易进口付汇业务办理确认书  附2：进口货物报关单“贸易方式”分类付汇代码表  附3：进口付汇登记表  附4：进口付汇逐笔核查报告表  附5：国家外汇管理局XX分（支）局现场核查通知书  附6：国家外汇管理局xx分（支）局考核分类通知书 |